상생발전 업무 협약서

조달기업공제조합(이하 '공제조합')과 조달법인강산(이하 '강산')은 공정한 공공조달 시장질서 확립과 발전, 회원사들의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안정적 진입 및 성장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업을 하기 위하여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적]

본 협약은 공제조합과 강산이 '건전한 공공조달 시장의 형성'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협력내용]

-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- 1. 공공조달 교육 및 조달제도 안내
- 2. 다수공급자계약, 우수제품 지정 등 공공조달계약 관련 컨설팅 및 자문
- 3. 조달 계약과 관련된 보증서비스 홍보 및 자문
- 4. 조달계약 보증제도에 대한 자문
- 5. 언론기관 설립과 관련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자문
- 6.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

제3조 [특약]

- 1. 공제조합은 강산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하여 지원할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.
- 2. 공제조합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한 기업에 대해 강산은 컨설팅 수수료에 관하여 10% 할인율을 적용한다.
- 3. 강산은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, 공제 조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.

4. 공제조합은 강산에게 공제조합 홍보,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 [정보 제공]

공제조합과 강산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한다.

제5조 [협약서 효력]

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상호 합의하여 일부 보완,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, 협약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서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 [기타]

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12월 27일

조달기업공제조합

조달법인 강산

이사장 이순종 대표 강경훈

月名李 78 万色